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이용대상자)

- ①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 ②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방문요양과정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

제4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 ① 이용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 ③ 지역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 ④ 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계약을 통한 명문화로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수급자 삶의 질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문서(공정거래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 ①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욕구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급여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③ 월 이용료는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만큼 산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의 규정을 따른다.

④ 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⑤ 방문목욕 급여는 차량 내 목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제10조 (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고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8,990원	80,230원	50,10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일반이용자 15%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절차 *

-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 접수
-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예정 대상자에게 관리자 사전방문을 통한 종합적인 상황 및 욕구파악. 욕구사정은 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함.
- ③ 서비스 계약 체결
- ④ 서비스 제공계획 및 통보 :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토대로 계획 작성 및 수립 후 통보함.
- ⑤ 요양보호사와 보호자(신원인수인) 및 수급자 사전 면담 및 인수인계
- ⑥ 서비스 제공